



제429회국회(정기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회계보고 및 첨부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제출〉
■ 위성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537호)

2025.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위성곤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7. 17.
3. 회부연월일 : 2025. 7.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 및 후원회 등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도록 하고,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수입·지출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예금통장 사본 및 감사의견서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문서가 활성화되어 있는 현 전자정부시대에 종이서류를 작성하고 영수증을 직접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회계보고를 하는 회계책임자 뿐 아니라 제출받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도 행정적 불편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회계책임자는 회계보고 사항 및 첨부서류를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5항 신설 등).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정당 및 후원회 등의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 사항 및 첨부서류를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5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0조(회계보고) ① ~ ④ (생략)	제40조(회계보고) ① ~ ④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⑤ 회계책임자는 제3항에 따른 회계보고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첨부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2조7호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u>
<u>⑤·⑥</u> (생략)	<u>⑥·⑦</u>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제1항 또는 제40조(회계보	5. ----- -----제40조(회계보

고)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또는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금액과 그 내역, 수입·지출에 관한 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제출한 자 또는 수입·지출에 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 또는 변조한 자 6.·7. (생략)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① · ② (생략) ③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3. (생략) 4. 제40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고)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 ----- ----- ----- ----- ----- ----- ----- ----- ----- 6.·7. (현행과 같음)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40조제6항-----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검토의견

현행법은 정당 또는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이하 “회계책임자”라 함)¹⁾로 하여금 법률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현재 정치자금에 대한 회계보고는 종이 문서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실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행정처리 방식은 전자정부 구현이라는 정부 방침과 사회전반의 디지털 전환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회계책임자와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적 부담이 과도할 뿐만 아니라 자료 보관 및 활용이라는 관점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개정안은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 사항 및 첨부서류²⁾를 전자문

1) 「정치자금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자의 종류

1. 정당의 회계책임자
2.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회계책임자
3. 중앙당후원회(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를 포함한다) 및 국회의원후원회·지방의회의원후원회의 회계책임자
4.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등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
5.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

2)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보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 및 후원회의 회계책임자

가. 재산상황

정당에 있어서는 12월 31일 현재의 회계보고에 한한다.

나. 정치자금의 수입내역

1회 30만원 초과 또는 연간 300만원(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여 수입을 제공한 자의 경우에는 성명·생년

서 또는 전자화문서³⁾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정치자금 처리와 관련된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회계책임자가 작성·제출한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에게 공개되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월일·주소·직업·전화번호와 수입일자 및 그 금액을, 그 이하 금액의 수입을 제공한 자의 경우에는 일자별로 그 건수와 총금액. 다만, 당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지출의 상세내역

2. 후원회지정권자(정당은 제외한다)·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 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1호에 의한다)

가. 후원금 및 소속 정당의 지원금으로 구입·취득한 재산상황

나.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수입·지출의 상세내역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2. 제39조(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3.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예금통장 사본

4.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체 감사기관의 감사의견서와 대의기관(그 수입기관을 포함한다)·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의결서[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자료를 포함한다] 사본[정당(정당선거사무소를 제외한다)과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 한한다]

5.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중앙당과 그 후원회에 한한다). 다만,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잔여재산의 인계·인수서(인계의무자에 한한다). 이 경우 제58조(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보전비용의 인계·인수서는 반환·보전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제출한다.

7.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서 사본(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와 그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에 한한다)

3)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되는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

8.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5월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공개시스템을 통하여 회계책임자가 관련 서류를 전자적 파일로 제출하는 개정의견을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7조⁴⁾에 따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

개정안과 관련하여 정치자금 회계문서의 전자적 처리를 추진하려는 취지에 긍정적인 입장이며, 관련 시스템 구축에는 약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시기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4)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7조(법령에 관한 의견표시등) ① 행정기관이 선거(委託選舉를 포함한다. 이하 이條에서 같다)·국민투표 및 정당관계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법령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 그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제정·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선거·국민투표·정당관계법률
2. 주민투표·주민소환관계법률.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범위에 한정한다.

《정치자금 인터넷 공개 관련 정치관계법 개정의견(2021년 5월 제출)》

□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상시 인터넷 공개 (§42)

현 행

정치자금 회계는 다음연도 2월 15일 또는 신분 상실 후 일정기간 이내에 보고하고, 열람(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및 사본교부를 허용하되,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명세서에 한하여 열람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함.

개정의견

-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및 그 후원회, 시·도당,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그 후원회는 매월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대하여 다음 달의 5일까지 상세내역(지출증빙자료 제외)을 선거관리위원회 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되, 인터넷 공개를 해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회계책임자는 회계보고 중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영수증 등 지출증빙자료 사본, 예금통장 사본, 심사의결서 또는 감사의견서 사본을 공개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파일로 제출하도록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회계보고 내역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공개시스템을 통해 상시 인터넷에 공개하고,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지출증빙자료 및 필요 시 소명내역 포함)을 검색·분류·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인터넷을 통하여 외부에 상시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허위·누락 보고를 예방하고, 국민, 시민·사회단체, 언론기관 등이 상호 검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문 의 처
02)6788-5342